<정관>

영남교회음악협회

(Yeongnam Church Music Association)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영남교회음악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교회음악의 연구•보급•발전을 도모하고, 예배음악의 질적 향상과 지역의 교회음악인 상호 간 교류 및 연합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회음악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및 자료발간
2. 성가 합창제, 찬양제, 세미나, 워크숍, 찬양경연대회 등 개최
3. 교회음악 지도자 및 찬양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 운영
4. 교회음악 관련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한국교회음악협회 산하 기관으로 역할 담당)
5. 미자립교회 찬양사역 지원 및 후원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협회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65길35 벽강빌딩 5층에 사무실을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교회음악에 종사하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한 개인
2. 준회원: 교회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3. 단체회원: 교회, 기관, 단체 등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단체
4. 명예회원: 교회음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고문: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이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단 명예회원 및 고문은 회비납부를 면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협회는 원활한 업무 및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15인 이내
3. 이사 1인 이상 50인 이내
4. 사무국장 1인
5. 사무차장 1인
6. 감사 2인
7. 임원의 구성은 총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선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협회의 주요 결정 사안과 운영에 참여한다.
4. 사무국장은 협회의 제반 실무와 회계 및 사업 진행을 총괄한다.
5. 사무차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각종 문서 및 공문을 관리한다.
6. 감사는 협회의 재정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임원의 구체적 직무를 따로 정한다.
8. 사무국의 구체적 직무를 따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선임 부회장은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4. 이사는 정회원 중 이사직에 준하는 회비 납부로 자격을 가진다.

제11조 (선출방법)
1. 회장은 선임부회장이 차기 회장이 되며 회장단의 만장일치로 추대한다.
2. 부회장은 총회 시 회원의 추천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다득표순으로 10인을 선출한다.
3. 감사는 회원의 추천과 회원 만장일치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 중 결원 발생 시 새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범법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회원의 징계 및 권리 제한은 별도로 둔다.

제4장 임원의 직무

제14조 (회장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3.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회장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 위원회 및 사무국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5. 회장은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원, 위원, 고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회장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5조 (부회장의 직무)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협회의 특정 업무 또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다.
3. 부회장은 이사회에 당연직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직무)

1.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협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이사는 협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을 심의•의결한다.
3. 이사는 회장 및 사무국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
4. 이사는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협회의 재산 상황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임원 및 사무국의 업무 집행이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감사한다.
3.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필요 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5장 고문

제18조 (고문의 설치)

본 협회의 목적 달성과 교회음악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9조 (고문의 자격)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교회음악, 신학, 예전, 합창, 지휘, 오르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교회 또는 교회음악 단체에서 오랜 기간 지식과 경험을 통해 봉사한 자
3)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고 자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 (위촉 및 임기)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문은 임기 중이라도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을 시 해촉할 수 있다.

제21조 (직무)

고문은 협회의 운영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통해 협회의 정체성과 중대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제22조 (권한의 제한)

고문은 임원이 아니므로 의결권 및 집행권을 가지지 않으며 일상적인 회무 및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제23조 (예우)
고문에 대하여는 그 공로와 직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회의

제24조 (회의 종류)
1. 총회
2. 이사회
3. 임원회의
4. 위원회

제25조 (총회)
1.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4.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4) 협회의 해산 및 중요한 재산 처분
 5)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

제26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총회는 개최일 30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부득이한 경우 서면결의 또는 전자회의(온라인 회의 및 sns 등)를 병행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협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 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의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3. 총회에 상정할 안건
4.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
5.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단 및 주요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의는 협회의 긴급 현안 및 실무사항을 협의한다.
3. 임원회의 결정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원회)
본 협회는 협회 목적과 사업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31조 (회의록)
1. 모든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자, 안건 및 의결 내용을 명확히 기록한다.
3. 회의록은 의장과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 보관한다.

제32조 (회의 운영의 탄력성)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 회의, 서면결의, 전자투표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대면 회의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 (재정의 원칙)
1. 본 협회의 재정은 건전성•투명성•공공성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2. 협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며 회계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재정의 구성)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연주 및 행사와 찬양제 등의 사업 수입
3. 후원금 및 찬조금

4. 보조금 및 지원금
5.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입

제35조 (회비)
1. 회원의 회비는 회원 구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2. 회비의 금액, 납부 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36조 (회비 금액)
1. 회장은 10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2. 부회장은 1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3. 이사는 5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4. 회원은 1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제37조 (회비 납부)
1. 회비는 매 회계연도 초에 납부하며 이사회가 조정 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으로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예산 편성 및 승인)
1. 회장 및 임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국장이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이전에 집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임시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결산)
1. 회장 및 임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무국장이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결산에는 수입•지출 내역, 재산 현황 및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1조 (지출 및 집행)
1. 협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 명의로 집행하되,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2. 일정 금액 이상 지출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준 금액은 일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예산에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 승인 후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 (회계처리)

1.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2. 모든 회계처리는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3.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는 10년 간 보관한다.

제43조 (재산의 관리)

1. 협회의 재정 및 자산은 회장이 총괄 관리한다.
2. 협회의 재정과 자산은 이사회 결의로 구분할 수 있다.
3. 협회의 재정이나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감사)

1. 본 협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재정 및 회계 운영 전반
 2) 예산 집행 및 결산의 적정성
 3) 재정 및 자산 관리상태
3.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재정 공개)

본 협회의 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회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범위 및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6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 말 잉여금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협회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47조 (해산 시 재산 귀속)

본 협회가 해산 할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음악 발전을 위한 비영리 단체 또는 교회에 귀속한다.

제8장 위원회

제48조 (위원회의 설치)

1. 본 협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예배음악위원회
 2) 합창•지휘위원회
 3) 교육•연수위원회

4) 편집•출판위원회
5) 홍보•대외협력위원회
6) 후원위원회
7) 감사자문위원회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설치,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49조 (위원회의 기능)
1. 예배음악위원회
1) 교회 예배음악 방향 연구
2) 예배용 성가•찬양 자료 자문
3) 교단•교회 예배음악 관련 협력
2. 합창•지휘위원회
1) 교회음악 발전을 위한 협력
2) 찬양제, 연주회, 세미나 기획
3) 찬양대 및 지휘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3. 교육•연수위원회
1) 교회음악 세미나, 워크숍 기획
2) 교회음악 지도자 및 봉사자 양성
3) 국내·외 교회음악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추진
4. 편집•출판위원회
1) 협회 발행물, 교재, 악보, 자료집 기획
2) 협회 홍보물 및 학술 자료 편집
3) 온라인 콘텐츠 및 미디어 관리
5. 홍보•대외협력위원회
1) 협회 홍보전략 수립
2) 교단, 교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
3) 대외 행사 및 협약 추진
6. 후원위원회
1) 협회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단체
2) 후원 및 재원 마련 방안 연구
3) 협회의 목적 사업 활성화
7. 감사•자문위원회
1)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2) 윤리 및 분쟁 발생 시 자문 역할 수행
3) 교단, 교회 목회자 및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50조 (위원회의 구성)
1.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협회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1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2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53조 (위원회의 자문적 성격)
1.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자문기구로 하며, 집행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2. 다만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한 해 제한적인 집행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제54조 (특별위원회)
1. 특정 사업 또는 한시적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 및 운영방식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9장 사업 및 활동

제56조 (사업의 목적)
본 협회는 영남지역 교회음악 발전과 보급, 교회음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제57조 (사업의 종류)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은 제8장 49조 위원회의 기능 항을 참고한다.

제58조 (사업의 추진)
1. 협회의 각종 사업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2.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사업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10장 회원의 징계 및 권리 제한

제59조 (징계의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협회의 목적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힌 경우
3. 협회의 사업 수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회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제60조 (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경고
2. 자격 정지
3. 제명

제61조 (징계절차)
1. 징계는 회장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에 상정한다.
2. 징계 대상 회원에게는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4. 징계 결과는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62조 (권리 제한)
1. 회비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 의결권
 3) 협회 주관 행사 참여 자격
2. 자격 정지 기간 중인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

제63조 (제명의 효력)
1. 제명된 회원은 즉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 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4조 (재심 청구)
징계 처분을 받은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장 포상

제65조 (포상의 목적)
본 협회는 교회음악 발전과 협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함으로써 회원의 사기진작과 협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 (포상의 대상)
포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회음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협회 사업 및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협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 또는 단체
4. 기타 이사회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7조 (포상의 종류)
1. 공로상
2. 감사패
3. 표창장
4.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포상

제68조 (포상 절차)
1. 포상 대상자는 회장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한다.
2. 포상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포상은 정기총회 또는 협회 주요 행사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제69조 (윤리 준수 의무)
본 협회의 임원 및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공익성을 존중하며,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0조 (사적 이익 추구 금지)
1. 임원 및 위원은 협회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협회의 재산, 정보 및 명의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이해충돌 방지)
1. 임원, 위원 및 회계 담당자는 협회와 개인 또는 관계 단체 간 이해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회장 또는 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한다.

제72조 (금품 수수 금지)
임원 및 회원은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 (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윤리 및 이해충돌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본 정관의 회원 징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장 사무국

제74조 (사무국의 설치)
본 협회는 협회의 행정 및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75조 (사무국의 구성)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사무차장 1인과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76조 (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행정 및 문서 관리
2. 회의 운영지원 및 회의록 관리
3. 회원 관리 및 대외 연락
4. 회계 및 재정 업무 보조
5. 사업 및 행사 실무 지원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7조 (사무국장의 직무)
1.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이를 집행한다.
2. 사무국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회의 결과를 관리한다.
3. 사무국장은 예산의 집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협회의 대내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78조 (사무차장의 직무)
1.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보좌하며 이를 집행한다.
2. 사무차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각종 문서 및 공문을 관리한다.
3. 협회의 대내외 행정 업무를 보좌한다.

제79조 (사무국 운영)
1.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2. 사무국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14장 정관의 개정

제80조 (정관 개정의 발의)
본 협회의 정관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발의할 수 있다.
1. 회장
2. 이사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서면 요청)

제81조 (정관 개정의 의결)
1.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2. 정관 개정은 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2조 (정관 개정의 공포 및 효력)
1.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장은 개정된 정관의 내용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장 보칙

제83조 (운영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운영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84조 (정관의 해석)
1.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2. 다만,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 (준용 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86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1월 26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2026년 1월 19일

영남교회음악협회

1차 개정: 2026년 4월 28일